

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190
----------	------

2023년 9월 8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나. 제출일 : 2023년 8월 14일
다. 회부일 : 2023년 8월 21일
라. 상정일 :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2023년 9월 5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인재개발원장 이희승)

가. 제안이유

-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인재개발원, 데이터센터, 서울연구원 직원 자녀(유아)를 보육하는 시설로서
-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련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중이며,
-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민간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
- 2)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 - 추진 근거
 -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
 -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(어린이집 운영기준 등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2 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 - 추진 필요성
 - 아동 보육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며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대비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
 -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- 3) 위탁 내용
 - 위탁기간 : 3년 ('24.1.1.~'26.12.31.)
 - 위탁업무
 - 어린이집 관리,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- 재산, 시설, 장비 등 위탁 재산관리
 - 기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필요사항
 - '24년 예산(안) : 233,472천원(보육료 수입 별도)
 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4) 위탁시설 개요
 - 시설명 :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쑥쑥어린이집
 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

○ 규 모 : 지상1층, 연면적 399.45m²

○ 인가일 : '08. 4. 28.



<어린이집 전경>



<실외놀이터>

5) 위탁운영 개요

- 정·현원 : 정원 36명, 현원 31명('23년 5월 기준)
- 교직원 : 총 9명(원장 1, 정교사 4, 보조교사 3, 조리사 1)
- 입소아동 : 만1~만5세 영유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영유아보육법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

-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(이하 생략)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-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제4조의3 (의회동의 및 보고)

- ① 시장은 …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○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(인재기획과-3480, '23. 3. 24.)

○ 2023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: '적정'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제1항¹⁾에 따라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본 동의안은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려는 것임.
- 본 건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에서 “심사보류” 결정되었던 안건(의안번호: 887, 「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」)으로, 정원(50명→36명) 및 소요예산(2억 7천 4백만원→2억 3천 4백만원) 등을 조정하여 재제출한 사항임.
- 다만, 본 동의안 재제출로 지난 정례회에서 지적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건 미충족과 시 소속 직원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로 심사보류된 사항들에 대해 적정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동의안 수정내용

○ 현원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고려, 아동 정원을 36명으로 축소 조정

- 현원 및 입소예정 자녀수를 고려하여 정원 50명에서 36명으로 28% 감축
- 최근 4년간 직원 평균 자녀 수는 9명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보육수요 있음

구 분	전체	만 1세반	만 2세반	만 3세반	만 4~5세반
현재정원	50명	10명	14명	12명	14명
현 원	31명	5명	7명	6명	13명
변경정원	36명	5명	7명	10명	14명

※ 2024년 졸업 예정(5세) 5명 중 직원자녀는 2명(서울연구원)이며, 입소 예정 인재개발원 직원자녀(0세) 1명

※ 배치기준: 만 1세반: 영아 5인당 교사 1인, 만 2세반: 영아 7인당 교사 1인, 만 3세반: 유아 15인당 교사 1인, 만4~5세반: 유아 20인당 교사 1인

○ 보육교사 정원을 6 → 4명으로 감원하여 인건비 절감 (37백만원)

- 만 1세반, 만 2세반의 보육교사 각각 1명씩 감원(271백만원 → 234백만원)
- 3월에 새학기가 시작하므로 3~12월까지 10개월 2명의 인건비 절감

구 분	만 1세반	만 2세반	만 3세반	만 4~5세반
보육교사 수(현재)	2인(5명)	2인(7명)	1인(6명)	1인(13명)
배 치 기 준	1인/ 영아 5인당	1인/ 영아 7인당	1인/ 유아 10인당	1인/ 유아 20인당
보육교사 수(조정)	1인	1인	1인	1인

○ 3년의 민간위탁 기간 산정 필요

- 직장어린이집 아동의 평균 재원 기간(3년 9개월)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간 3년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

<기존 동의안>

- (아동정원) 50명
- (2024 예산안) 274백만원

<수정 동의안>

- (아동정원) 36명
- (2024 예산안) 234백만원

인재개발원 어린이집 현황

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
- 규모 : 지상1층, 연면적 399.45m²
- 지원시설
 - 개원일 : 2008. 5. 1.
 - 근무인원 : 11명(원장 1, 정교사 6, 보조교사 등 3, 조리사 1)
 - 모집정원 : 50명(6학급), 2023년 입소기준

구분	합계	만0세	만1세	만2세	만3세	만4~5세
교실수	4	—	1	1	1	1
학급수	6	—	2	2	1	1
아동수	50	—	9	12	13	16
교사수	6	—	2	2	1	1

위탁 운영 방안

- **위탁기간 : 3년(2024.1.1 ~ 2026.12.31)**
- **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**
 - 자격조건 :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
- **사업비 : 233,472천원(2024년 안)**
 - **인건비 : 180,371천원**
 - 급여 : 12,309,479원*12월=147,714천원
 - 운영관리수당(시설장) : 200,000원*12월=2,400천원
 - 보험 : 2,521,407원*12월=30,257천원
 - **관리운영비(전기, 가스비 등) : 29,302천원**
 - 전기요금 : 1,383,741원*12개월 = 16,605천원
 - 도시가스 : 337,489원*12개월 = 4,050천원
 - 건물관리비 : 720,551원*12개월 = 8,647천원
 - **운영비 지원 : 23,800천원**
 - 친환경급식비 지원: 10,000원*50명*12개월 = 6,000천원
 - 보육교사 연구개발비 : 25,000원*6명*12개월 = 1,800천원
 - 교재 교구비 : 500,000원*12개월 = 6,000천원
 - 기능보강비(에어컨청소, 개·보수비 등) = 10,000천원
- **위·수탁 사무**
 - 어린이집 관리,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- 재산, 시설, 장비 등 위탁 재산관리
 - 기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필요사항

나.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

1)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검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- 결혼과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·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,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을 통한 고용 안정 촉진의 필요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「영유아보육법」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"위탁보육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

제20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.

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·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 다만,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(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)

2.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·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.

- 다만,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인재개발원, 데이터센터, 서울연구원 직원 자녀(유아)를 보육하는 시설로, 각 기관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으며, 2023년 7월말 기준으로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	계	인재개발원	데이터센터	서울연구원
상시근로자수	485	126	82	277
여성근로자수	218	56	27	135
총근로자수	485	126	82	277

※ 인재개발원 근로자 수는 녹지관리(5명), 청원경찰(4명), 청소 공무직(5명), 청소 촉탁직(4명) 종사자를 포함한 수치임.

- 또한, 2023년 7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정원(50명) 대비 현원(29명)은 58% 수준으로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자녀는 없으며, 서울연구원(7명)이나 지역주민(19명)의 자녀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, 민간위탁 예산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.

[최근 3년간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입소자 현황]

- 입소자 현황

구 분	계	만1세	만2세	만3~5세
2023년 (7월 말 기준)	정원	50명	10명	14명
	현원	29명	5명	7명
2022년	정원	50명	10명	14명
	현원	36명	7명	9명
2021년	정원	50명	10명	14명
	현원	39명	9명	14명

- 입소자 부모 소속 실국

구 분	계	인재개발원	서울연구원	데이터센터	기타 (출연기관 등)
2023년 (7월말 기준)	10명	0명	7명	1명	2명
2022년	14명	1명	7명	2명	4명
2021년	11명	1명	5명	2명	3명

※ 기타 : 서울시 출연기관(서울연구원 제외), 자치구 공무원

[최근 3년간 직장어린이집 입소자 중 서울시 직원 이외 입소자 추이]

구 分	2023년 (7월말 기준)	2022년	2021년
계	19명	22명	28명
서초구민	17명	20명	26명
기 타	2명(광진구, 강남구)	2명(성남시, 과천시)	2명(성남시, 용인시)

- 아울러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에 따르면,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을 100분의 3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,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을 제외한 현재 서울시 소속 직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은 정원(50명)기준 2%(데이터센터 1명)에 불과하여, 법적 설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.

※ 인재개발원은 동 시행규칙의 근로자 자녀 비율은 사업주 공동운영의 경우 또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, 인재개발원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.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

제7조제2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”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.

「영유아보육법」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“위탁보육”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2)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

-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을 개선하거나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.
- 반면, 민간위탁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 사용료 인상 추진을 통한 이용자부담 증가 및 공적인 사명감 부족 등의 단점 또한 있다고 할 것임.
- 인재개발원은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보다는 보육 및 육아교육에 전문성과 인력, 장비 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,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왔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<직장어린이집 수탁 현황>

위탁기간	수탁기관명	비 고
‘08. 5. 1 ~ ’10. 12. 31	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	
‘11. 1. 1 ~ ’13. 12. 31	함께하는 보육,	
‘13. 12. 31	함께하는 보육 (포기서 제출)	
‘14. 1. 2.	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	
‘14. 2. 1 ~ ’18.12.31	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	
‘19. 1. 1 ~ ’23.12.31	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	
‘24. 1. 1 ~ ’26.12.31	선정 예정	

「영유아보육법」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~② 생략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다만,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아동 입소 증감추이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, 서울시 직영운영체제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- 한편,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 직원들의 실질적인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설치·운영되어야 할 것이며,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는 이용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인재개발원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 - 이를 위해 인재개발원은 보육수요가 있는 인력의 우선배치 등 서울시 직원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- 또한,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지역 주민 자녀 입소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, 민간위탁 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3) 지도점검 결과 및 종합성과평가(평가인증) 검토

-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, 대부분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,
 -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한 평가인증 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나타남.
- ※ 인재개발원은 어린이집의 경우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제1항²⁾에 따라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, 평가인증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.
- 인재개발원은 직장어린이집 시설, 위생, 직원 관리 등에 운영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주의와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[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]

2022년 하반기	2023년 상반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 관련: 적정 <하반기 시설 개·보수 확인 내역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리실 내 가스레인지 교체(7월) - 조리실 내 누전차단기 누수 관련 조치 완료(9월) - 보육실 금 간 유리창 교체 완료(10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직원 관련: 교직원 2명 건강진단서 개신 필요('23.6.30 점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신 확인 완료 ○ 시설 관련: 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년 1분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 완료 - 2023년 2분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 완료

-
- 2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(어린이집 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, 보육과정 운영,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○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(영유아보육법 제30조)

- 평가일시 : 2019. 5. 13. ~ 5. 17.
- 평가기관 : 한국보육진흥원
- 평가결과 : A 등급 (A, B, C, D 중 최고 등급)
- 유효기간 : 2019. 07. 15. ~ 2023. 07. 14.

* 2023년도 '평가인증 제도'의 평가는 2023년 8월 28일~9월 1일 예정

- 평가내용

평가영역	평가지표	영역등급	영역별 종합의견
보육과정 및 상호작용	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등 7개 지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우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필요	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이 우수한 수준입니다. 표준보육과정을 반영하여 보육과정을 통합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, 교사의 교수-학습 방법 및 상호작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보육환경 및 운영관리	실내외 공간 구성 등 5개 지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우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필요	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이 우수한 수준입니다. 어린이집의 실내외 공간이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, 정해진 규정 및 방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가정,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바람직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.
건강·안전	급간식, 실내외 공간 청결 등 5개 지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우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필요	건강·안전 영역이 우수한 수준입니다. 청결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,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바람직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.
교직원	원장 리더십, 근무환경 등 4개지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우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필요	교직원 영역이 우수한 수준입니다.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돋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교직원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.

4) 민간위탁 기간 검토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3항에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11조(협약체결 등)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- 다만, 현재 당해 시설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, 시 소속직원 자녀의 직장 어린이집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있는 현 상황에서 위탁기간을 3년 (2024.1.1.~ 2026.12.31.)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 - 특히, 향후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, 민간 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 재계약(2년)이 가능한 바, 이를 감안한 동의안 의결이 요망된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7명, 전원 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1190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인재개발원, 데이터센터, 서울연구원 직원 자녀(유아)를 보육하는 시설로서
- 나.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련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중이며,
- 다.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민간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 - 추진 근거
 -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
 -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(어린이집 운영기준 등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2 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○ 추진 필요성

- 아동 보육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며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대비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
-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다. 위탁 내용

○ 위탁기간 : 3년 ('24.1.1.~'26.12.31.)

○ 위탁업무

- 어린이집 관리,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재산, 시설, 장비 등 위탁 재산관리
- 기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필요사항

○ '24년 예산(안) : 233,472천원(보육료 수입 별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라. 위탁시설 개요

○ 시설명 :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쑥쑥어린이집

○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

○ 규모 : 지상1층, 연면적 $399.45m^2$

○ 인가일 : '08. 4. 28.



<어린이집 전경>



<실외놀이터>

마. 위탁운영 개요

- 정·현원 : 정원 36명, 현원 31명('23년 5월 기준)
- 교직원 : 총 9명(원장 1, 정교사 4, 보조교사 3, 조리사 1)
- 입소아동 : 만1~만5세 영유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영유아보육법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

-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-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제4조의3 (의회동의 및 보고)

- ① 시장은 …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-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(인재기획과-3480, '23. 3. 24.)
- 2023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: ‘적정’

작성자 :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행정7급 이기연(☎ 02-3488-2038)